

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(신정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67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9.

발 의 자 : 신정훈 · 문금주 · 서삼석
이정문 · 김문수 · 서미화
김현정 · 차지호 · 강경숙
이재관 · 이언주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임.

최근 국가의 미래 신성장 동력인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하여 기술개발 및 인력 공급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, 현장에서는 전문인재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.

그런데, 현행법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학생정원·입학자격 등 관련 사항을 정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어 학생 관련 사항을 정할 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 요건을 보고로 완화하여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23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1항 중 “정하되,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”를 “정하고,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학생) ① 한국에너지공대 의 학생정원·입학자격 및 입 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 이 <u>정하되,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의 승인을 받고</u> 교육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	제23조(학생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정하고,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</u> <u>과</u> ----- 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